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주 택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보다는 높고 주변시세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공급 여력을 높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 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 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u> <u>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u> <u>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지역별</u> <u>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u> <u>단체의 장(사업주체가 지방공</u> <u>사인 경우 해당 지방공사를</u> <u>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u> <u>말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u> <u>다만, 이 경우 제2호에 따라</u> <u>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u> <u>다.</u></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